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대안교육기관 등록신청서

※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개월
------	------	------	------	-----

신청인 (설립·운영자)	성명(법인명):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	법인등록번호: 250121-0048507
	전화번호 법인사무실 : 070-7733-2842 담당자 : 010-6541-1136	전자우편주소: yulbang1311@gmail.com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2로 56	

신청내용	명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열방아카데미학교
	목적	대안교육기관 열방아카데미학교는 이웃을 보살피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열 수 있도록 청소년을 교육함으로써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2로 56 (2,3,4,5층)
	개설연월일	2019년 9월 23일
	교육목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며, 개인의 재능과 창의력을 향상시켜 지성, 영성,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학생 정원	정원: 126명(초: 84명, 중: 42명), (현원 59명, 초: 37명, 중: 22명)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5월



신청인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 대표 최정일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담당자 확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1. 대안교육기관 학칙 1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2. 경비와 유지방법(재정운영계획서) 1부	<input type="checkbox"/>	
	3.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부	<input type="checkbox"/>	
	4. 교직원 배치계획서 1부	<input type="checkbox"/>	
	5. 교육시설·설비 등 현황 1부	<input type="checkbox"/>	
	6. 교사 및 교지(校地)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공통 제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용승낙서(사본)	<input type="checkbox"/>	
	7. 신청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공통)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시설·단체)고유번호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input type="checkbox"/>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립·운영자가 1인 이상(법인 및 단체 등기 임원 포함)인 경우에는 임원 전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제출가능)

신청인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 대표 최정일 인)



작성방법(뒷면 참조)

대안교육기관 열방아카데미학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따라 본 교육기관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교육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열방아카데미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 교육기관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2로 56 (2, 3, 4, 5층)에 위치한다.

제4조 (교육목적) 본 교육기관은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5조 (학급 수) 본 교육기관의 학급 수는 9학급으로 한다. (초 6학급, 중 3학급)

제6조 (학생정원) 본 교육기관의 학생 정원은 126명으로 한다. (초 84명, 중 42명)

제3장 수업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7조 (수업연한) 본 교육기관의 수업연한은 초등학교 과정 6년, 중학교 과정 3년으로 한다.

제8조 (학기) 본 교육기관의 학년은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마지막 일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 (휴업일)

- ① 본 교육기관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2. 공휴일
 3. 여름방학, 겨울방학과 학년말방학
 4. 학교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재량휴업일
- ② 제1항 각호 이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수업일수 및 과정수료, 취학 의무 유예

제10조 (수업일수) 본 교육기관의 수업일수는 188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수료)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출결처리)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별도 지침에 따름)
 5.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취학 의무 유예)

- ① 본 교육기관 재학 또는 입학 예정 학생은 법 및 영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 13조의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하려는 학생의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한 학생이 본 교육기관에서의 학업을 중단 또는 종료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제15조 (교육과정)

- ① 본 교육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제4조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대안교육기관 열방아카데미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③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제16조 (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평가는 학생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대해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되,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에 역점을 둔다.
- ③ 평가 결과는 학생 간 상호 비교나 서열화를 지양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돕는 지도 및 보호자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
- ④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6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17조 (포상 및 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 및 징계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8조 (학생자치활동)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 ②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것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9조 (기타 학생의 학교생활) 기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7장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제20조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 그 외 학부모 부담 경비)

- ①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 그 외 학부모 부담 경비(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업료 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률, 임금인상률, 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업료 등을 산정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이 수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행령 [별표2]의 수업료 등 반환기준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등을 반환한다.

제8장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제21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 ① 법 및 영에 따라 본 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7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법 및 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2.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의 책정·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6. 본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7.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 외의 학부모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
8.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9. 급식에 관한 사항
10. 영 제12조 제4호에 따른 교원(敎員)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11. 본 교육기관의 폐쇄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12. 그 밖의 규정으로 정하거나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9장 학칙개정

제22조 (학칙개정 절차)

- ① 학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 ②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 ④ 제3항의 개정된 학칙은 법 및 영에 따라 교육청에 제출한다.

제23조 (기타사항)

- ①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② 본 학칙에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도·감독기관의 관련 지침 내용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수업료 등 반환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업료 등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학생이 수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가. 수업료 등의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1) 교육시작 전	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
		2) 총교육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업료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교육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수업료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교육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업료 등의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1) 교육시작 전	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
		2) 교육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업료 등(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업료 등을 말한다)과 나머지 달의 수업료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1. "수업료 등의 징수기간"이란 수업료의 경우 징수된 총수업료 등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하고, 입학금의 경우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기간 동안의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교육시간"이란 수업료 등의 징수기간 중의 총교육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납부한 수업료등에 입학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총 반환금액은 수업료 및 입학금 각각의 징수기간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낸 수업료등의 금액에서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경비와 유지방법(재정운영계획서)

1.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보조금	자부담	
① 입학금	12,000	① 인건비		383,940	
② 수업료	499,140	② 임대료		-	
③ 기부금(회원) <small>방과후</small>	10,000	③ 시설 관리비		13,200	
④ 후원금(교회)	10,000	④ 기타 운영비		22,000	
⑤ 보조금	국 가	-	⑤ 홍보비	5,000	
	서 울 시	-	⑥ 학부모 교육사업 강사비	3,000	
	교 육 청	-	⑦ 사업 지출	시간강사료	77,000
	자 치 구	-		방과후 과정 강사료	36,000
	기 타	-		교재교구비	24,000
		대안교육 연구비		3,000	
⑥ 수익 사업 수입			문화체험수련 활동비	20,520	
			급식비	75,240	
⑦ 수련활동비	20,520	⑧ 수익 사업 지출	인건비	-	
⑧ 급식비(11석 5개월)	75,240		관리비	-	
⑨ 방과후과정	36,000		기 타	-	
⑩ 기타수입	-	⑨ 기타지출		-	
⑪ 전기이월액	-	⑩ 차기이월액		-	
합 계	662,900	합 계		662,900	

2. 학생 1인당 부담액 산출내역

(1) 입학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입학금	입학금 징수액	산출기초
입학생	초등학교 과 정	1,000	3,000	- 1,000,000원 × 3명 = 3,000,000원
			1,000	- 500,000원 × 2명 = 1,000,000원 ※ 목회자 자녀 50% 감면
중 학 교 과 정	1,000		- 1,000,000원 × 1명 = 1,000,000원	
편입생	초등학교 과 정		4,000	- 1,000,000원 × 4명 = 4,000,000원
	중 학 교 과 정	3,000	- 1,000,000원 × 3명 = 3,000,000원	
계			12,000	

* 입학금 감면 : 교직원(열방교회 목회자 포함)자녀 면제, 타 기관 목회자 자녀 50%

(2) 수업료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수업료(월)	학생 현황(명)				수업료 감면자 현황
		학년별	학생수	남	여	
초등학교 과 정	700	1	6	3	3	- 10% 감면 : 5명 - 50% 감면 : 5명 - 70% 감면 : 1명
		2	9	5	4	
	850	3	2	-	2	
		4	4	3	1	
		5	6	3	3	
		6	10	5	5	
소 계	37	19	18	24명		
중 학 교 과 정	950	1	11	5	6	- 10% 감면 : 8명 - 50% 감면 : 2명 - 70% 감면 : 3명
		2	3	2	1	
		3	8	6	2	
		소 계	22	13	9	
합 계			59	33	27	37명

* 수업료 : 매월 납부

* 수업료 감면 : 2자녀 이상 재학시 10%, 교직원(열방교회목회자 포함) 70%, 타 기관 목회자 자녀 50%

(3) 입학금 및 수업료 산정 기초자료

(금액단위 : 원)

연번	학 년	성 명	입학금	수업료 내역				비 고
				정상수업료(월)	감면율(%)	감면학비(월)	연간 납부액	
1	초등1	배○○	1,000,000	700,000	-	-	8,400,000	
2	초등1	윤○○	1,000,000	700,000	10	630,000	7,560,000	2자녀 재학 10% 감면
3	초등1	이○○	500,000	700,000	50	350,000	4,200,000	목회자 자녀 50% 감면
4	초등1	전○○	1,000,000	700,000	10	630,000	7,560,000	2자녀 재학 10% 감면
5	초등1	하○○	-	700,000	70	210,000	2,520,000	교직원 자녀 70% 감면
6	초등1	현○○	500,000	700,000	50	350,000	4,200,000	목회자 자녀 50% 감면
7	초등2	김○○	-	700,000	50	350,000	4,200,000	목회자 자녀 50% 감면
8	초등2	김○○	1,000,000	700,000	-	-	8,400,000	
9	초등2	문○○	-	700,000	10	630,000	7,560,000	2자녀 재학 10% 감면
10	초등2	문○○	-	700,000	10	630,000	7,560,000	2자녀 재학 10% 감면
11	초등2	민○○	1,000,000	700,000	-	-	8,400,000	
12	초등2	박○○		700,000	-	-	8,400,000	
13	초등2	안○○		700,000	50	350,000	4,200,000	목회자 자녀 50% 감면
14	초등2	장○○		700,000	50	350,000	4,200,000	목회자 자녀 50% 감면
15	초등2	최○○		700,000	10	630,000	7,560,000	2자녀 재학 10% 감면
16	초등3	김○○		850,000	-	-	10,200,000	
17	초등3	전○○		850,000	10	765,000	9,180,000	2자녀 재학 10% 감면
18	초등4	기○○		850,000	-	-	10,200,000	
19	초등4	나○○		850,000	10	765,000	9,180,000	2자녀 재학 10% 감면
20	초등4	박○○		850,000	-	-	10,200,000	
21	초등4	윤○○	1,000,000	850,000	10	765,000	9,180,000	2자녀 재학 10% 감면
22	초등5	성○○		850,000	10	765,000	9,180,000	"
23	초등5	신○○		850,000	10	765,000	9,180,000	"
24	초등5	안○○		850,000	50	425,000	5,100,000	목회자 자녀 50% 감면
25	초등5	장○○		850,000	50	425,000	5,100,000	"
26	초등5	천○○	1,000,000	850,000	-	-	10,200,000	
27	초등5	최○○		850,000	10	765,000	9,180,000	2자녀 재학 10% 감면
소 계			8,000,000				201,000,000	

연번	학 년	성 명	입학금	수업료 내역				비 고	
				정상수업료(월)	감면율(%)	감면학비(월)	연간 납부액		
28	초등6	김○○		850,000	-	-	10,200,000		
29	초등6	김○○		850,000	10	765,000	9,180,000	2자녀 재학 10% 감면	
30	초등6	나○○		850,000	10	765,000	9,180,000	"	
31	초등6	안○○		850,000	50	425,000	5,100,000	목회자 자녀 50% 감면	
32	초등6	오○○		850,000	10	765,000	9,180,000	2자녀 재학 10% 감면	
33	초등6	원○○		850,000	-	-	10,200,000		
34	초등6	윤○○		850,000	-	-	10,200,000		
35	초등6	장 ○		850,000	10	765,000	9,180,000	2자녀 재학 10% 감면	
36	초등6	정○○		850,000	10	765,000	9,180,000	"	
37	초등6	홍○○		850,000	-	-	10,200,000		
38	1	중1	소○○	1,000,000	950,000	-	-	11,400,000	
39	2	중1	신○○		950,000	10	855,000	10,260,000	2자녀 재학 10% 감면
40	3	중1	이○○	1,000,000	950,000	-	-	11,400,000	
41	4	중1	이○○		950,000	-	-	11,400,000	
42	5	중1	장 ○		950,000	10	855,000	10,260,000	2자녀 재학 10% 감면
43	6	중1	장○○		950,000	50	475,000	5,700,000	목회자 자녀 50% 감면
44	7	중1	정○○		950,000	10	855,000	10,260,000	2자녀 재학 10% 감면
45	8	중1	정○○		950,000	70	285,000	3,420,000	교직원 자녀 70% 감면
46	9	중1	진○○		950,000	50	475,000	5,700,000	목회자 자녀 50% 감면
47	10	중1	천○○	1,000,000	950,000	-	-	11,400,000	
48	11	중1	하○○	-	950,000	70	285,000	3,420,000	교직원 자녀 70% 감면
49	12	중2	김○○	1,000,000	950,000	-	-	11,400,000	
50	13	중2	성○○		950,000	10	855,000	10,260,000	2자녀 재학 10% 감면
51	14	중2	최○○		950,000	10	855,000	10,260,000	"
52	15	중3	김○○		950,000	10	855,000	10,260,000	"
53	16	중3	김○○		950,000	-	-	11,400,000	
54	17	중3	김○○		950,000	-	-	11,400,000	
55	18	중3	김○○		950,000	-	-	11,400,000	
56	19	중3	박○○		950,000	-	-	11,400,000	
57	20	중3	신○○		950,000	10	855,000	10,260,000	2자녀 재학 10% 감면
58	21	중3	오○○		950,000	10	855,000	10,260,000	"
59	22	중3	이○○		950,000	70	285,000	3,420,000	교직원 자녀 70% 감면
소 계			4,000,000				298,140,000		
합 계			12,000,000				499,140,000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 교육과정 개요

- 가. 교육목표 :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며, 개인의 재능과 창의력을 향상시켜 지성, 영성,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 나. 교육대상 : 8세~13세(초등학교 과정 37명), 14~16세(중학교 과정 22명)
- 다. 교육기간 : 2023. 03. 01. ~ 2024. 02. 29. (연간 수업일수 188일)
- 라. 교육장소 : 교실, 도서관, 과학실 및 체험학습장 등

2. 연간 교육일정

일 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2023년 3월	입학식	
3월 ~ 7월	1학기 (수업일수 94일)	
7월 ~ 8월	여름방학	
9월 ~ 12월	2학기 (수업일수 94일)	
2024년 1월 ~ 2월	겨울방학	

3. 교육과정 편성표

교육과정	과목명	수업시수(주간)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영성 (예배, 기독교 세계관)	2	2	2	2	2	2	2	2	2
	국어	4	4	3	3	3	3	2	2	2
	국어선택							1	1	1
	인문학	1	1	1	1	1	1	1	1	1
	영어	5	5	5	5	5	5	4	4	4
	영어프로젝트						1			
	영어선택							1	1	1
	수학	3	3	4	4	5	5	5	5	5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창의사고력 수학	1	1	1	1					
	과학			2	2	2	2	2	2	2
	자연관찰	1	1							
	사회			2	2	2	2	2	1	1
	역사								2	2
	음악	1	1	1	1	1	1	1	1	1
	미술	2	2	2	2	2	2	1	1	1
	체육	2	2	2	2	2	2	1	1	1
	나눔	1	1	1	1	1	1	1	1	1
	진로									1
	탐구선택							1	1	1
	제2외국어							2		
	컴퓨터					1			1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해양소년단 -항공우주소년단	2	2	2	2	2	2	2	2	2
소 계		25	25	28	28	29	29	29	29	29
기 타	복습노트(35분)			3	3	4	4	4	4	4
합 계		25	25	31	31	33	33	33	33	33

4. 과목개요

교육과정	과목명	수업목표와 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영성 (예배, 기독교 세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품교육을 통해 올바른 자아상을 정립하게 하며, 혼탁한 인본주의적 세상을 성경적이고 복음적 관점으로 올바르게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 표현활동 및 문법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를 사용하게 한다. 국어문화를 향유하면서 국어의 발전과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한다. 	
	국어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 국어 과정을 고전 산문, 고전문문, 현대 시, 현대 소설, 수필과 극, 문법, 비문학 등으로 세분화하여 매 학기 해당 과정의 기초를 학습하게 한다.
	인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기의 지적 발달 과정에 맞춰 인문사회 도서를 읽도록 하여, 인간을 이해 하는 힘과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키우도록 한다. 학생들이 지적 탐구를 통한 앎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이에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는 학업성과의 향상을 도모한다. 	

교육과정	과목명	수업목표와 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영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 Phonics를 활용하여 영어의 소리를 구분하고, 단어와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 3-4 : English Grammar를 시작하며, 짧은 문장을 읽고 듣고 쓸 수 있음을 목표로 한다. ■ 5-6 : 중등 영문법의 기본을 시작, 중등 필수 어휘 마스터, 중급 레벨의 영어 리딩을 통해 배운 영문법의 적용과 복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 영문법 정리하여 고등 독해와 글쓰기 준비 완료, 중등 필수 어휘 마스터, 중급 이상 레벨의 영어 리딩을 통해 배운 영문법의 적용과 복습
	영 어 프로젝트 영 어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학년: 세계 여러 나라, 영어 노래 만들기 등과 같은 주제의 PBL 수업을 통해 영어실력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법을 주제별로 나눠 매 학기 해당 주제에 대한 기초와 심화 과정을 선택하여 학습하게 한다.
	수 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수학의 규칙성과 구조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고,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다른 교과와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나아가 세계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사고력 수 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1~4: 참신하고, 재미있고, 실생활과 밀접한 수학 전 영역의 문제를 관찰, 상상, 추리, 활동 등 다양한 사고 방법을 단계화, 체계화하여 도전하고 해결하면서 창의성, 유연성과 직관력을 기른다. 	
	과 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3~중3: 과학적인 지식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탐구 능력을 배양하며, 과학적인 지식과 탐구 능력 배양을 통해 과학적인 소양을 기른다. ■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과학적인 현상들을 이해하여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데 이용한다. 	
	자연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1~2: 실외 관찰, 채집 활동을 통해 사계절의 날씨 변화와 생물의 생태계에 대해 이해한다. 	
	사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역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2~중3: 정치, 경제, 문화, 사회사의 연계와 학습을 통해 한국사의 효용을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시야를 넓히고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해하며, 장래 미래 역량이 될 세계사와 한국사의 유기적인 연계를 완성한다.
	음 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할 뿐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향유하고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 수업 방식은 이론 수업, 연주, 감상 및 음악놀이 활동 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활동 및 체험을 통해 잠재된 창의성, 감수성 등을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갖게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교과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즐길 줄 아는 것, 주제에 맞는 표현 방식을 탐구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 조형 요소들의 역할과 느낌을 이해하고 작품에 적용 ■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내용과 느낀 점을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발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스트레칭과 근력운동, 신체발달 수준에 맞는 줄넘기 동작 수행, 급수 줄넘기로 동기 부여를 준다. ■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체육활동으로 즐겁게 활동하며 신체발달, 사회성, 자신감, 자존감 향상을 돕는다. ■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의 균형적인 도모함은 물론이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교육 대신 아이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끌어낸다. ■ 규칙을 준수하며, 인간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협동심, 적극성 등의 사회적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둔다.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ting Time, 서클, 나눔 특강 등의 공동체 활동, 학생회 선거, 전교 학생회의, 학급 회의 등의 학생 자치 활동, 자유 독서, 특강 등의 특별활동 진행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3: 학생들이 자신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폭넓은 탐색과 체험을 통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진로, 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한다.
	탐구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학문 분야의 수업을 선택하게 하여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며, 학생들이 흥미를 발전시켜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게 한다.
	제2외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1: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 외국 문화의 이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해당 문화에 대한 배려심과 존중의 자세를 확립한다.
	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학년: -소프트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연습한다. -절차적 사고에 의해 문제 해결 순서를 생각하여 실생활에 적용해 봄으로써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킨다. -향상된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체험하여 창의적 사고 역량과 정보처리 역량을 함양한다. ■ 중2: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 및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파워포인트와 엑셀 프로그램을 연습한다. -다양한 입출력 장치와 프로그래밍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하고, 컴퓨팅 사고를 적용하여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융합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창의적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동아리, 청소년 단체 활동(초등 한국해양소년단, 중등 한국우주소년단), 환경 보호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스포츠 활동, 일일 체험학습 등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과 인성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복습 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동안 학습한 내용을 백지에 자신의 생각과 함께 자유롭게 작성해 보는 과정에서 자신을 모니터링하여 자신이 알고 모르는 것을 찾게 하며, 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고민하며 생각하여 인출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단기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던 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성장하게 한다.

5. 시간표

가. 초등학교 과정(3-4학년)

시간	월	화	수	목	금
1교시 (09:25~10:10)	나눔	사회	사회	영성예배	기독교 세계관
2교시 (10:20~11:05)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3교시 (11:15~12:00)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창의사고력 수학
(12:00~12:45)	점심시간				
12:45~13:00	하우스 모임	하우스 모임	하우스 모임	놀이	놀이
4교시 (13:10~13:55)	국어	국어	국어	인문학	창의적 체험활동
5교시 (14:05~14:50)	과학	과학	미술	미술	
6교시 (15:00~15:45)	종례	체육	체육	음악	
6교시 (15:55~16:30)		복습노트			

나. 중학교 과정(2학년)

시간	월	화	수	목	금
1교시 (09:25~10:10)	나눔/자율	과학	과학	영성예배	기독교 세계관
2교시 (10:20~11:05)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선택
3교시 (11:15~12:00)	수학	수학	수학	클리닉 수학	클리닉 수학
(12:00~12:45)	점심시간				
12:45~13:00	하우스 모임	하우스 모임	하우스 모임	놀이	놀이
4교시 (13:10~13:55)	국어	국어	국어 선택	인문학	창의적 체험활동
5교시 (14:05~14:50)	사회	역사	역사	컴퓨터	
6교시 (15:00~15:45)	음악	미술	체육	탐구선택	
7교시 (15:55~16:30)		복습노트			

교직원 배치계획서

1. 교직원 현황

2023. 5. 23. 현재

총 인원	교 원					직 원
	교장	교감	정규교사	강사	소계	
26	1	1	11	10	23	3

2. 자격별 교원 현황

구분	교육과정	담당 과목명	자격 구분(인원수)				결격사유 이상유무
			1호	2호	3호	4호	
교장	초·중학교	학교운영총괄	1	-			이상무
교감	초·중학교	교육과정총괄	1	-			이상무
정규교사	초·중학교	국어, 인문학 국어 선택	1	-		1	이상무
정규교사	초·중학교	영 어	1	2			이상무
정규교사	초·중학교	수 학	3	-			이상무
정규교사	초·중학교	사 회	1	-			이상무
정규교사	초·중학교	과학, 자연관찰	1	-			이상무
정규교사	초·중학교	미술, 영어	1	-			이상무
강 사	중학교	과 학	1	-			이상무
강 사	중학교	역 사	-	1			이상무
강 사	중학교	영 어	-	2			이상무
강 사	중학교	제2외국어	-	-		1	이상무
강 사	초·중학교	컴퓨터	-	1			이상무
강 사	초·중학교	음 악	-	1			이상무
강 사	초등학교	체 육	-	1			이상무
강 사	초·중학교	영 성	-	1			이상무
강 사	초·중학교	기독교세계관	1	-			이상무
소 계			12	9		2	

3. 교·강사 자격소지 여부

성명	대안교육경력	관련 자격 소지 현황			구분
		자격증명	발급기관	자격취득일	
이경만	2021.08~현재	중등정교사 1급	교육부	1994	교장/1호
석소영	2019.08~현재	중등정교사 2급	교육부	2001.2.22	교감/1호
지은정	2004.02~2006.11 2018.06~현재	중등정교사 2급	교육부	1996.2.23	정규/1호
박혜민	2019.03~현재	중등정교사 2급	교육부	2012.8.17	정규/1호
김혜경	2019.09~현재	중등정교사 2급	교육부	2005.2.18	정규/1호
나수경	2021.08~현재	중등정교사 2급	교육부	2003.2.24	정규/1호
최유나	2023.03~현재	중등정교사 2급	교육부	2018.2.19	정규/1호
김현정	2019.03~현재	중등정교사 2급	충남대학교	2017.8.25	정규/1호
		TESOL	숙명여자대학교	2008.12.18	
김상원	2020.03~현재	중등정교사 2급	교육부	2016.2.18	정규/1호
이정혜	2020.09~현재	중등정교사 2급	교육부	2020.2.19	정규/1호
김영란	2022.03~현재	독서/글짓기 지도사	한양여자대학	2003.2	정규/4호
		한국어교원 2급	문화체육관광부	2016.4	
박태은	2019.09~2021.02 2022.03~현재	-	-	-	정규/2호
권세인	2019.12~현재	-	-	-	정규/2호
David	2020.03~현재	-	-	-	강사/2호
Jamie	2022.03~현재	-	-	-	강사/4호
이치호	2022.12~현재	개인과외교습 신고	서울남부교육지원청	2021.10.18	강사/2호
전미진	2022.03~현재	중등정교사 2급	교육부	1999.2.19	강사/1호
노지은	2019.09~현재	문화예술교육사 2급	한국문화예술교육 교육진흥원장	2018.4.16	강사/2호
		방과후지도사 1급	한국방과후교육진흥원	2018.10.31	
이익정	2019.09~현재	음악줄넘기 2급	대한줄넘기협회	2018.05.30	강사/2호
		방과후 밴드스트레칭 지도자	(사)한국생활스포츠 교육협회	2012.10.03	
김건희	2019.09~2022.02 2023.03~현재	-	-	-	강사/2호
이진상	2019.09~현재	-	-	-	강사/2호
박에스터	2023.04~현재	중등정교사 2급	교육부	2023.2.9	강사/1호
이동란	2023.03~현재	ITQ 정보기술자격	한국생산성본부	2018	강사/2호
		코딩, 드론, 3D 프린팅교육 강사2급	미래여가본부	2020	
		SW코딩자격증2급	한국생산성본부	2021	

교육시설 · 설비 등 현황

가. 시설 현황

소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편2로 56 열방아카데미학교(2·3·4·5층)											
규모	교사 연면적 2,972.84㎡ / 기공 1,111㎡											
소유 구분	자가(), 무상임대(○), 유상임대() ※ 유상임대 : 전세 만원(년), 월세 만원(년), 기타 만원(년)											
공간 구분	학습공간(실수)							관리공간(실수)				기타 공간
	보통 교실	체육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실습실	도서관	컴퓨터실	교장실	교무실	상담실	회의실	
	⑨	①	①	①	-	①	①	①	①	①	①	
(2층)	① 2층 : 체육실(휴게실 겸용), 음악·미술실 겸용, 과학실, 도서관 배치											
(3층)	② 3층 : 중학생 과정(1-3학년)교실 배치, 도서관(중층)											
(4층)	③ 4층 : 초등과정(1-6학년)교실, 교장실, 교무실(행정실 겸용), 컴퓨터실, 상담실 배치											
(5층)	④ 5층 : 식당 및 조리실, 옥상에 미니 농구장 및 축구장 배치											
	⑤ 기타공간 : 각 층별(2-5층) 남/여 화장실 설치											
	※ 1층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예배실 등 배치											

붙임 1 : 교사(학습공간 및 관리공간) 배치도 및 평면도

나. 설비 현황

구분	보유 현황 (수량 및 위치, 종류 등)	비고
위생설비	발열온도계(주출입구), 상비약, 체온계(교무실), 식기소독기(식당), 신속항원검사 Kit	
급수설비	정수기(2층, 3층, 4층, 5층)	
급식설비	조리실, 식당(5층), 식자재창고(5층)	
소방설비	소화전, 소화기,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감지기, 화재경보기 (각층)	
환기설비	공조기(지하층), 공기청정기(각교실)	
기타설비	냉난방용 에어컨(각 교실), 엘리베이터(장애인용)	

다. 교구 현황

구분	보유 현황 (수량 및 위치, 종류 등)	비고
도서류	국문 및 영문도서 약 10,000권	각 교실 도서관 교무실
학습교구	음악교구: 전자피아노(4), 우쿨렐레(10), 소고(20), 칼림바(18), 리듬악기세트(4), 핸드벨, 붐웨커, 킷타, 우드블럭, 실로폰, 멜로디언 체육교구: 농구공(5), 고무공(10), 피구공(1), 콩주머니(30), 공기놀이(10), 배드 민턴라켓(6), 훌라후프(10), 긴줄넘기(2), 타이머(2) 과학교구: 현미경(3), 저울(1), 실험도구 등	각 실 보관소
기계·기구류	대형티비: 일반교실(9), 컴퓨터실(1), 과학실(1), 음악미술실(1), 교장실(1) 칠판: 일반교실(9), 교무실(1), 컴퓨터실(1), 과학실(1), 음악미술실(1), 체육실(1) 빔프로젝터(스크린): 식당(1), 초5교실(1), 초6교실(1) 학습용 노트북: 컴퓨터실(12), 교무실(4) 기타: 방송설비, CCTV, 전자칠판, 이동식칠판, 라미네이터, 전동공구, 문서세 단기, 복사기, 복합기, 데스크탑컴퓨터, 전자레인지, 인터넷공유기, 전화기 식당: 냉장고, 소독기, 식기세척기, 오븐, 쿡탑, 식기도구, 조리도구 등	각 교실 교무실 교장실 창고 식당
가구류	책상 및 걸상 (130, 학생용), 책상 및 의자(20, 교사용), 교실사물함(15), 복도수납장(5), 책장(10), 회의테이블(3), 교실테이블(8), 의자(30), 소파(2)	각 교실 교무실 복도
기타	신발장(2), 식당테이블(42), 식당의자(170), 비상약품(1)	각 교실 교무실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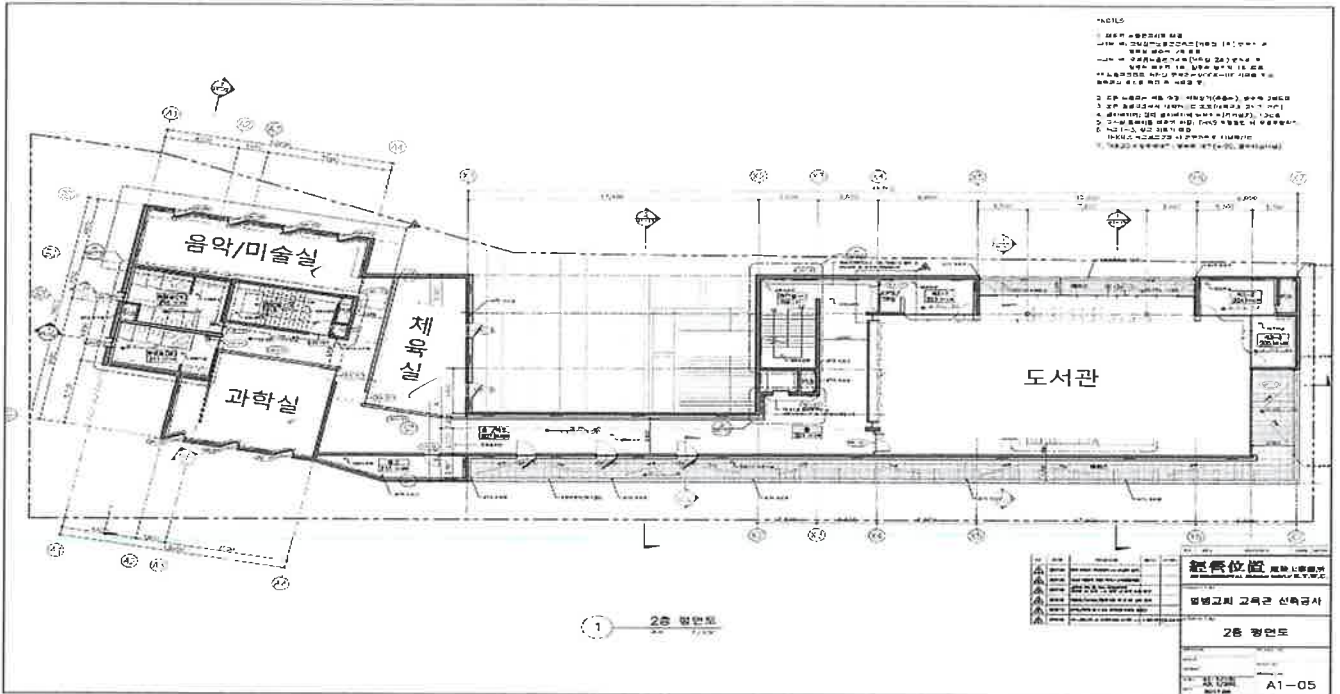
붙임1

교사(학습공간 및 관리공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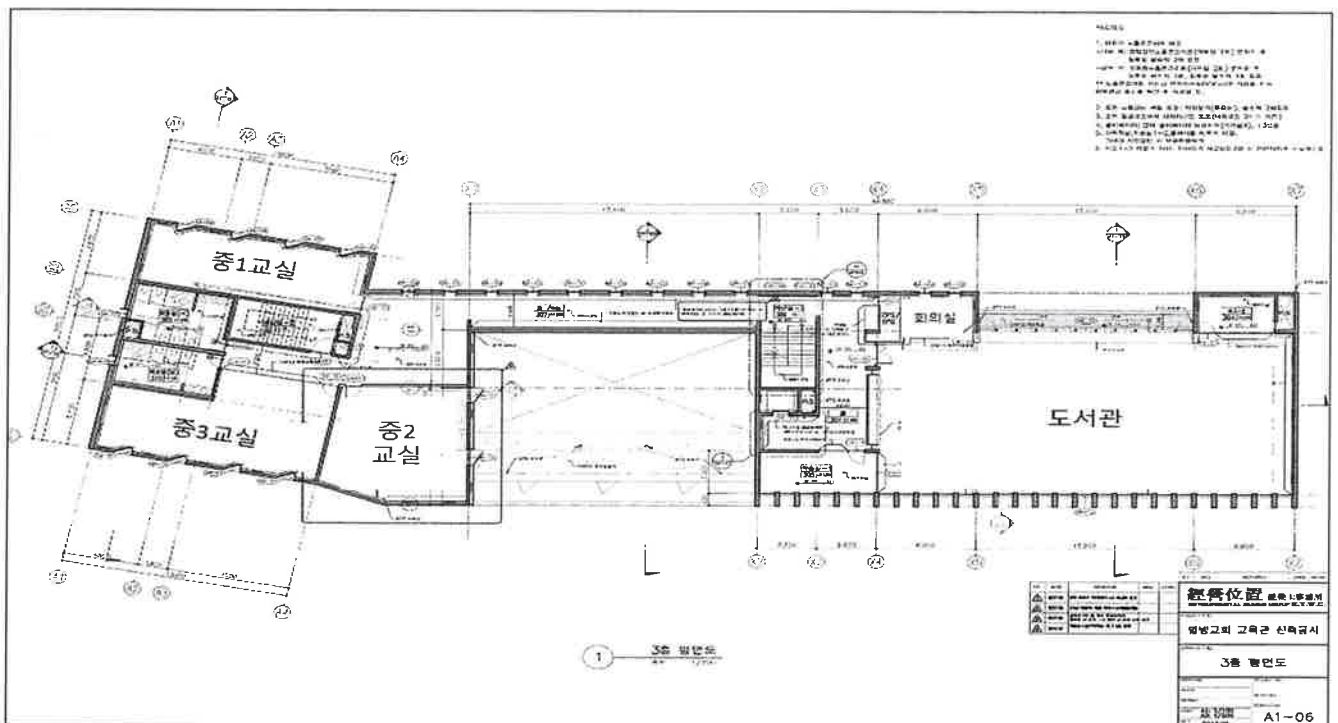
층별	용도별	배치 실수	면적(m ²)	세 부 사 항																		
2층	체육실	1	43.96	① 체육실은 학생들의 휴게실로 겸용 사용하고 있음 ② 음악실과 미술실은 겸용 사용하고 있음 ③ 2층 도서관 외에, 2층 천장의 일정 부분을 뚫은 형태로 3층에도 도서관을 배치하고 있음																		
	음악실 미술실	1	61.10																			
	과학실	1	65.55																			
	도서관	1	269.30																			
	소 계	4	439.91																			
3층	중학생 교 실	3	217.04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colspan="3">중등 교실별 면적(m²)</th> </tr> <tr> <th>1학년</th> <th>2학년</th> <th>3학년</th> </tr> </thead> <tbody> <tr> <td>61.1</td> <td>66.98</td> <td>88.96</td> </tr> </tbody> </table>	중등 교실별 면적(m ²)			1학년	2학년	3학년	61.1	66.98	88.96									
	중등 교실별 면적(m ²)																					
	1학년	2학년	3학년																			
	61.1	66.98	88.96																			
회의실	1	15.0																				
도서관	1	186.96																				
소 계	5	419.0																				
4층	초등생 교 실	6	338.17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colspan="6">초등 교실별 면적(m²)</th> </tr> <tr> <th>1학년</th> <th>2학년</th> <th>3학년</th> <th>4학년</th> <th>5학년</th> <th>6학년</th> </tr> </thead> <tbody> <tr> <td>42.32</td> <td>47.14</td> <td>59.1</td> <td>59.1</td> <td>71.65</td> <td>58.86</td> </tr> </tbody> </table>	초등 교실별 면적(m ²)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42.32	47.14	59.1	59.1	71.65	58.86
	초등 교실별 면적(m ²)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42.32	47.14	59.1		59.1	71.65	58.86															
	교장실	1	25.92																			
	교무실	1	69.54																			
상담실	1	15.0																				
컴퓨터실	1	22.0																				
소 계	10	470.63																				
5층	식 당 주 방	1	339.0	① 본교 식당은 학생 및 교직원 전용식당이며, 양천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필하였음 ②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하였으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																		
	미 니 농 구 축구장	1	195.0 <i>(34.5m x 5.7m)</i>		① 옥상에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미니 농구장과 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의 체육수업 시 사용 ② 휴식시간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음																	
	소 계	2	534.0																			
합 계		21	1863.54 → <i>1,668.54</i>																			
1층	열방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음																					
지하 1/2층	교회 예배당, 법인사무실, 주차장, 기타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교사(학습공간 및 관리공간) 배치도

□ 2층 평면도



□ 3층 평면도



부동산 무상사용 승낙서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2로 56
2. 승낙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방교회 대표(목사) 최정일
3. 사용면적 : 2,972.84㎡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열방아카데미학교』의 교육장(교실, 음악실, 과학실, 도서관 등)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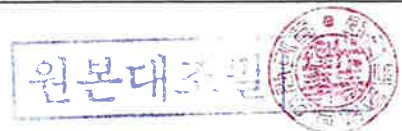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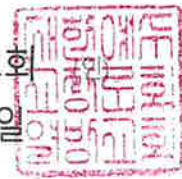
가. 사용기간 : 2023. 03. 01. ~ 2029. 05. 31.

(기간 만료시 무상 사용기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용조건 :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열방아카데미학교』의 교육장 용도로 어떠한 조건없이 자유롭게 무상으로 사용하되, 사용기간 동안 소규모 시설의 변경 및 시설 관리에 따른 소요비용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2023년 2월 28일

무상사용 승낙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방교회
대표(목사) 최정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제출용] -

고유번호 2501-2019-027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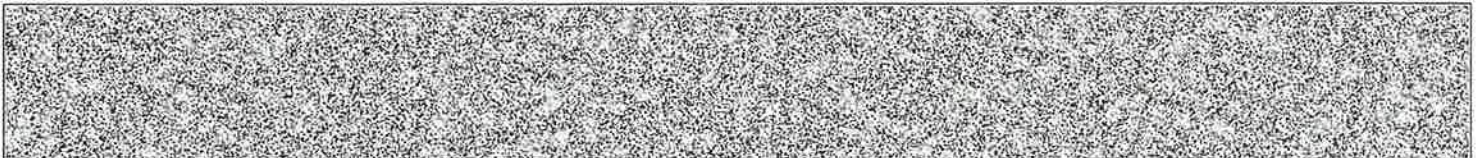


[건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22-14 대한예수교장로회열방교회

【 표 제 부 】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9년9월1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22-14 대한예수교장로회열방교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2로 56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종교시설 지2층 1,151.99 m ² 지1층 1,276.23 m ² 1층 589.25 m ² 2층 864.73 m ² 3층 816.53 m ² 4층 865.78 m ² 5층 425.8 m ²) > 1,912.84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19년9월17일 제166903호		소유자 대한예수교장로회열방교회 11304-014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13길 11(신정동) 대표자 소병근 580805-*****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8길 5-14(신정동)
1-1	1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	2021년4월15일 제85679호	2021년2월28일 대표자변경	대표자 성명(명칭) 최정일 등록번호 690406-1330519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8길 5-14, 5층(신정동)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건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22-14 대한예수교장로회열방교회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19년9월27일 제175533호	2019년9월26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7,140,000,000원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열방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13길 11(신정동)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 110111-4809385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마사회지점) 공동담보 토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22-14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3년 5월 22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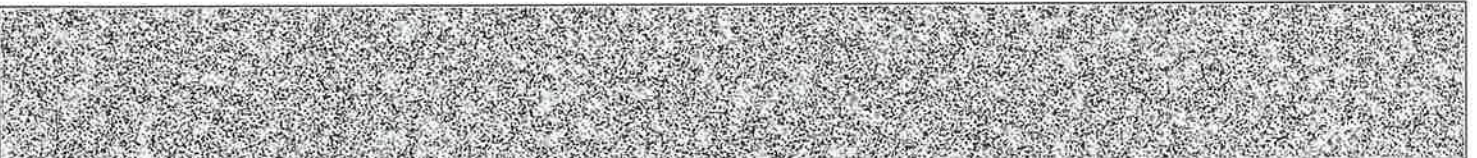


*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기록사항 없는 갑구,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 으로 표시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250202250012030510101902200000273925ELR21303ND1112

발급확인번호 AALZ-UHHT-3133

발행일 2023/05/2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제출용]

등기번호	004850
등록번호	250121-0048507
명칭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2로 56(신정동)

목적	
<p>본 법인은 이웃을 보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열 수 있도록 청소년을 교육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본 법인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이와 관련된 교육 사업 2. 아동 및 청소년 학부모 교육 3. 대안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 4.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과 수련활동 5. 진로·진학을 위한 방과 후 과정 운영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최정일 690406-1330519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8길 5-14, 5층(신정동) 대표권제한규정 대표권제한규정 이사 최정일 외에는 대표권 없음	
이사 정상석	560209-1531114
이사 최성준	710305-1108824
이사 김희진	590515-1537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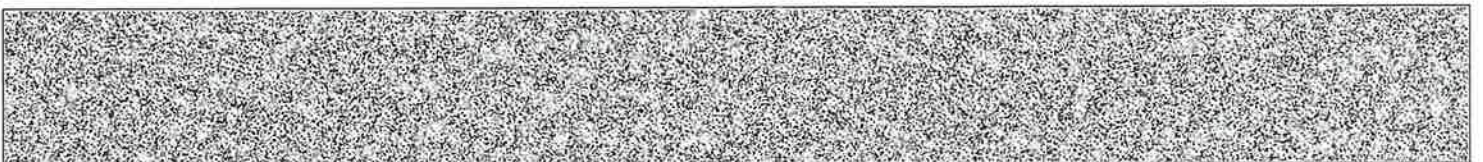
기타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산의 총액 없음 1. 설립인허가연월일 2022년 9월 26일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성립연월일	2022년 10월 14일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22년 10월 14일 등기
-------------------------	------------------

-- 이 하 여 백 --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90407022900020215100312000251804DONOR1L2E1000502 1 발급확인번호 8505-AAWX-WCAA 발행일:2023/05/22

등기번호	004850
------	--------

관할등기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과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3년 05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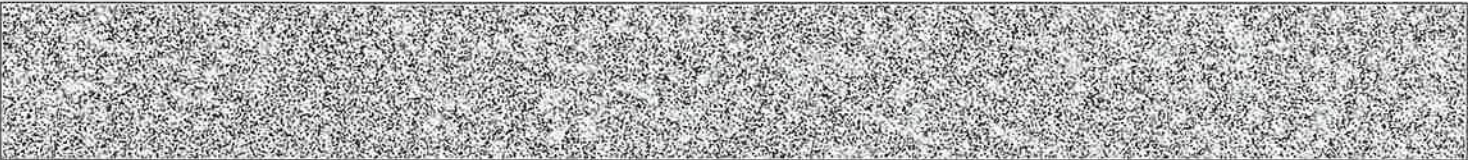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90407022900020215100312000251804DON0R1L2E1000502 1

발급확인번호 8505-AAWX-WCAA

발행일:2023/05/22

定 款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 정관

제정 2022년 7월 18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 ①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편2로 56" 에 둔다.
- ② 본 법인은 필요한 곳(경기도 및 지방 포함)에 지부 및 분사무소를 둘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이웃을 보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열 수 있도록 청소년을 교육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이와 관련된 교육 사업
2. 아동 및 청소년 학부모 교육
3. 대안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
4.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과 수련활동
5. 진로·진학을 위한 방과 후 과정 운영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본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 ① 본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입회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지 부(분사무소)

제11조(지부장의 자격) 지부장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본 법인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

제12조(지부장의 권리) 본 법인의 지부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① 지부장은 대의원으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으로서의 권익을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본 법인 이사회가 승인한 사업의 동참 및 주관, 워크숍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부장의 의무) 본 법인의 지부장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본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지시사항 준수
- ②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 ③ 회비 및 기타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
- ④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본 법인에 보고할 의무 준수

제14조(지부장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지부장이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지부장은 본 법인의 의결사항 및 규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본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4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임)

- ① 본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며,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8조(상임이사)

- ① 본 법인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1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이사장 포함)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에 관한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장 총회

제24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매매, 양도 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이 사 회

제3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1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3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4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5조(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차입금)

본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결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의 공개)

- ① 본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각각 공개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기구 및 사무부서

제43조(기구·직제·정원)

- ① 본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
 2. 각종 목적사업을 위한 연구회 및 부설기구
 3. 지부 및 분사무소
- ② 1항의 각 호를 운영하기 위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본 법인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45조(법인해산)

-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5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최정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8길 5-14, 5층 (신정동)	3년
이 사	정상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33, 1402동 728호 (마곡동,마곡엠밸리14단지)	3년
이 사	최성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13길 38, 105동 402호 (신정동,신정e-편한세상)	3년
이 사	김희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불로 16, 3층호	3년
감 사	김민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2, 507동 902호 (백현동,백현마을)	2년
감 사	곽국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170, 107동 1601호 (신정동,신정현대아파트)	2년



2022년 7월 18일



발기인(대표)

최정일



발기인

정상석



발기인

최성준



발기인

김희진



발기인

김민호



발기인

곽국휘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점검[]) 점검표

(7쪽 중 1쪽)

※ 소방시설, 다중이용업란의 []란에는 해당 시설에 ✓ 표를 한다. 점검결과란은 양호○, 불량X, 해당없는 항목은 /표시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건물명(상호)	열방교회센터	대상물 구분	종교시설
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신정이펜2로 56(신정동 132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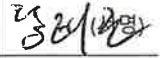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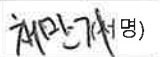
□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구분	해당설비	점검결과	구분	해당설비	점검결과
소화설비	[v]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피난구조설비	[v]피난기구	○
	[v]소화기구(소화기·자확·간이)	○		[v]공기안전매트·피난사다리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		(간이)완강기·미끄럼대·구조대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		[]다수인피난장비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승강식피난기	/
	[v]가스·분말·고체자동소화장치	○		하향식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	/
	[v]옥내소화전설비	○		[]인명구조기구	/
	[v]스프링클러설비	○		[v]유도등	X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유도표지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		[]피난유도선	/
	[]물분무소화설비	/		[v]비상조명등	○
	[]미분무소화설비	/		[]휴대용비상조명등	/
	[]포소화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소화수조 및 저수조	/
	[]할론소화설비	/		[]거실제연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	[]부속실 등 제연설비	/		
[]분말소화설비	/	[v]연결송수관설비	○		
[]강화액소화전설비	/	[]연결살수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전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	[]연소방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v]방화문, 자동방화셔터	○		
[v]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	[]비상구, 피난통로	/		
[v]비상방송설비	○	[v]방 염	○		
[]통합감시시설	/				
[]자동화재속보설비	/				
[]누전경보기	/				
[v]가스누설경보기	○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점검결과

구분	해당설비	점검결과	구분	해당설비	점검결과
소화설비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비상구	[]방화문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비상구(비상탈출구)	/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기타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가스누설경보기	/		[]영상음향차단장치	/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		[]누전차단기	/
	[]피난유도선	/		[]창 문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피난안내도·피난안내영상물	/	
	[]휴대용비상조명등	/	[]방염대상물품	/	
			비고		

□ 점검업체(점검인력) 현황

구분	성명	자격구분	자격번호	점검참여일(기간)	서명
주인력	하 균 홍	소방시설관리사	제2010-25호	2023. 3. 2. ~ 3. 2.	
보조인력	황 태 원	소방설비기사	21201072494C	2023. 3. 2. ~ 3. 2.	
보조인력	채 만 기	소방설비기사	22204071281T	2023. 3. 2. ~ 3. 2.	

점검기간(일자): 2023 년 3 월 2 일 ~ 2023 년 3 월 2 일 까지 (총 점검일수: 1 일)

소방시설관리업체(등록번호): 주식회사 고려방재 (제2014-4호)

대표자: 하 균 홍



점검번호 구분

대분류 (설비구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1'번으로 하여 설비별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다중이용업소 '32'번까지로 함
중분류 (단위구분)	각 설비별 점검단위에 따라 'A'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부여함
소분류 (점검항목)	각 설비별 점검단위 내의 점검항목에 따라 '001'부터 순서대로 부여함

작성 및 유의사항

- 소방시설등 (작동, 종합)점검결과보고서의 '각 설비별 점검결과' 에는 본 서식의 점검번호를 기재한다.
-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및 점검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023-0097354 호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법 인 명 :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 법 인 번 호 : 250121-0048507

대 표 자 : 최정일

생 년 월 일 : 1969년04월06일

시 설 명 칭 : 사단법인 열방아카데미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2로 56 (신정동)

신 고 조 건 : 법 제8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5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이
행하고 기타 신고권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해야함.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4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수리함.

2023년 03월 30일

원본대조필



양 천 구 청 장



영업장면적 : 339.00㎡

영업을 폐업할 때에는 양천구 보건위생과와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며,
보건위생과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